

한국신문의 보도사진 현황과 개선방향

신 우 식 서울신문편집제작담당 이사

I. 머리말-문제의 제기

지난번 수습기자 채용시험 때의 일이다. 사진기자 지망자들의 면접에서 「한강에 투신하려는 사람을 보았을 때 먼저 사람을 구하겠는가, 사진을 먼저 찍겠는가?」를 물었을 때 응시자 모두가 「사람을 먼저 구하겠다」고 대답했었다. 질문자는 적어도 한 두 사람은 「사진을 먼저 찍겠다」는 대답을 기다렸고, 「사진취재부터 먼저 한 다음 물 속에 뛰어 들어가 사람을 구하겠다」는 「모범답안」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이런 삽화를 먼저 내세우고 오늘의 한국 신문에서 보도사진의 위치와 사진기자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반성과 함께 개선, 발전의 방향을 찾아보려는 것이 이 글의 뜻하는 바다. 한국 최초의 신문사진은 이론이 없지 않으나, 매일신보의 1910년 11월 3일자에 실린 일본 천황(명치)의 59회 생일축하 사진이라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¹⁾ 한국 보도사진의 역사는 식민지 통치기관의 기관지에서 비롯되었고, 그 내용도 「성수만재」라는 종주국의 우두머리 생일축하로 시작된 셈이다. 한국인 사진기자에 의한 보도사진이 아니라 「얻어다 쓴」 사진이었다. 그 「슬픈 최초」로부터 따지더라도 우리의 보도사진의 역사는 80년이 채 못 된다. 일제치하에 우리의 보도사진이 겪은 수난도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광복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시련과 시험과 각고의 길을 걸어 왔다. 오늘에 와서 적어도 신문지면에서의 사진의 위치와 비중이 어느 정도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겠다. 그러나 양식면, 윤리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고, 보도사진의 본령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우리 보도사진이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 또한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보도사진은 「역사의 목격자」로 불린다. 과연 오늘의 우리 보도사진이 역사의 목격자라는 지고의 자금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 볼 때라고 본다. 비단 사진기자 자신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신문이 (편집진이) 보도사진에의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23개 일간신문 및 통신사 그리고 그 신문, 통신사가 내는 주간, 월간 등 자매지의 사진기자들이 망라된 한국사진기자회의 회원 총수는 2백 40명이다(1987년 1월 10일 현재).²⁾ 이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 보도사진 기자이다. 이들의 주민등록도 수없이 바뀌어왔다. 초기 도제제도시절로부터 시작하여 「사진반」에 머물러 있다가 「사진기자」로의 뚝뚝한 주소를 찾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또한 기재의 놀라운 발전은 어제의 사진기자가 누릴 수 없던 특혜와 이점을 오늘의 사진기자는 형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정치와 신문처럼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분야도 없다」는 속설을 듣는다. 바꾸어 말하면 신문 속의 사진, 곧 보도사진도 발전이 없다는 뜻이 된다. 첫머리에서 지적했듯이 「얻어다 쓴」 사진으로부터 우리의 보도사진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오늘의 우리 신문의 교과서는 일본 신문이었다고(이라고) 볼 때 제자리 걸음을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보도사진의 오늘과 내일은 비관적이 아니다. 여러 갈래에 걸쳐서 우리의 보도사진은 낙관적인 요소를

비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의 우리 보도사진이 놓인 위치와 현실을 적나라하게 헤쳐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역사의 목격자로서의 보도사진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보도사진이 나오고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초상권 문제 등에 대해 보도사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보도사진이 대접을 받고 그 값어치가 인정되려면 신문 제작과정에서부터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볼 때,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도 추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진기자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문제도 마땅히 훑어 보아야 할 것이며, 「사진기자의 길」도 다시 한번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II. 보도사진의 위치

1. 어제의 비중과 오늘의 변모

주 72면 매일 12면씩 내는 한국의 중앙 일간신문에는 하루 평균 15장의 사진이 실리고 있다. 동정란·단신·잡신 등에 나오는 인물사진, 기고문의 필자사진 등 단순 인물사진을 제외한 「움직이는 사진」의 수량이다. 이 중에서 전송사진 또는 외국신문잡지 전재의 해외사진 평균 2장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3장의 사진이 실리는 셈이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사건, 학원, 풍속, 보건 등), 문화(예술, 과학, 여성, 학술, 종교 등), 그리고 체육 등의 뉴스사진으로 대별된다. 보도사진의 「신분」의 역사와 관련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신문에서 사진은 뉴스의 종속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뉴스의 보완적 역할로서의 사진, 사건 기사를 설명 또는 입증하는 보조자로서의 사진, 어느 행사의 기념 사진적 굴레를 벗지 못한 사진-이것이 바로 우리 보도사진의 위치였다. 여기 굳이 과거 형으로 기술한 것은 오늘의 보도사진은 어느 정도 변모해 가고 있고, 그 위치가 뚜렷해지고 튼튼해져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외적인 요인을 보자. 무엇보다도 시대적 상황의 변천과 문화습관의 변화가 보도사진, 곧 신문 속의 사진을 선호하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시대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관념적인 것보다는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박차를 가한 것이 사진기술의 발달이라고 하겠다. 단적으로 만화선호인구가 늘어 가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환영하는 시대이다. 어쩔 수 없이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의 이행을 촉진시킴으로써 보도사진의 격상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생활면에서 문화습관의 변화 또한 보도사진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 한몫을 했다고 보겠다. 국민의 신문을 읽는 시간량이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 그 실증이다. 한국방송공사의 조사를 보면, 1985년의 경우 국민 한 사람이 신문을 읽는 데 소비하는 평균 시간량은 35분이다. 이는 1983년의 37분에 비해 2분이 줄어 들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3) TV 시청에 소비하는 평균 시간량(평일)은 자그마치 2시간 3분(1985년)이다. 4) 신문을 읽는 습성은 이렇게 달라져가고 있다. 뉴스도 TV를 통해서 본다. 신문을 면마다 차근차근히 읽지 않고 다만 「보기만」 한다. 제목만 훑어보다가(읽지 않고) 사진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진설명을 얼핏 보고(읽지 않고) 그리고 만화(시사만평 또는 연재만화)를 보면 그만이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오늘의 우리 생활습성 속에 이미 배어 버렸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월 프로개편과 함께 한국방송공사는(KBS-2TV) 아침 7 시대에 「생방송-전국은 지금」을 내보내고 있다. 그 제 1 부에서 그날 아침 신문의 주요제목을 스피디하게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외의 주요뉴스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출근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이다.5) 신문의 주요제목을 남이 펼쳐 가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될 만큼 신문을 읽지 않는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다는 하나의 실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외적 요인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신문내부에서도 보도사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압력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독자의 요구가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 쪽으로 기울어 져가고 있다면 만드는 쪽에서도 「읽는 신문」을 지양하고 「보는 신문」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 독자의 문화습성 변화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요구가 오래 전부터 움터 왔는데도 우리 신문은 도무지 사진에 인색했었다. 1960년대 말에 우리의 신문사진에 대한 자가비판이 있었다. 당시의 중앙일보 편집국장(1967-1971) 이규현의 발언이다. 「...제가 항상 여러 신문을 보고 사진의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열해본다면 첫째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사진을 너무 작게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작은 사진을 <우표딱지사진>이니 엄지손톱 사진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작은 사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신문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연주광경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사진이 이렇게 작게 실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표딱지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차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목 위에다가 전차를 기다랗게 냈는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것은 큰 회합인데 이렇게 3 면에다 작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우표딱지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대학 수료식 광경인데 전경이 이렇게 작게 실렸습니다. 이런 것은 밑에 큰 얼굴 사진만 하나 나오면 이런 사진은 죽어버린 사진입니다. 예를 들면 많습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표딱지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1 단에 새로 발행된 우표 석장을 내놓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신문에서 이런 것을 찾아 내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6) 하루 4 면을 발행한 20년 전의 우리 신문에서 이미 「우표딱지 사진」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신문과 비교해 볼 때에 그야말로 금석의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우표딱지 사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역시 놀라운 변모를 가져왔다고 보겠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쫓아 독자의 요구와 감각에 부응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보도사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오늘에 와서 신문제작자들의 보도사진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있다. A 신문의 경우를 한번 보자. 편집인은 매일 아침에 열리는 편집회의에서 「사진을 크게 써라, 사진을 과감하게 써라」고 역설,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신문이 사진을 크게, 과감하게 쓰기

시작하자 B 신문, C 신문의 사진 크기도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향용 2 단 크기가 3 단으로, 3 단 크기가 4 단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30 행, 50 행 의 기사, 아니 2 백자 원고지 10 장, 20 장의 해설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그 사건 그 상황의 내용을 극명하게 또렷하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생리적으로 인식한 편집자들에게도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진의 크기가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시원하다든가 보기 좋다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독립된 저널리즘으로서의 보도사진의 위치를 다지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신문에서의 사진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사의 보완적 기능, 설명적인 기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취재 각부에서 사진부에 알려주거나 출사를 의뢰해서 찍는 사진이다. 어떤 기사의 보충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다. 또 연재소설의 삽화처럼 어떤 기사의 삽화구실을 하거나 레이아웃의 장식 기능, 보조구실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여태까지, 적어도 몇 년 전까지 우리 신문에서의 사진 쓰기의 지배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두드러진 변모가 일기 시작했다. 한 장의 사진이 기사로서의 구실과 값어치를 지니는 독자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사에 붙은 장식물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사진이 주가 되고 거기에 설명이나 짧은 기사를 붙이는 뉴스 또는 뉴스스토리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한 신문학자는 신문사진이 ① 정보를 제공하고, ② 독자를 설득하며, ③ 오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로 독립하게 되었다고 보고있다.7) 이러한 독립성을 지닌 보도사진은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사진기자의 뉴스감과 뉴스두뇌로 이룩되는 보도사진이다. 모든 사물과 상황을 신문기자의 눈으로 보고 이를 포착하는 것이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보고, 한강다리의 난간에 걸린 자동차를 잡는다는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통사람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에 보도사진 기자는 셔터를 누르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실례를 하나 들어 보자. 어느 사진기자가 기차 안에서 어떤 여성이 예쁜 개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일본에서는 눈이 부자유한 사람도 맹도견을 데리고 기차나 비행기에 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성은 몸집이 작은 애완견을 바구니에 넣고 탄 것이었다. 사진기자는 양해를 구하고 셔터를 눌렀다. 휴가로 고향에 다녀 오는 길에 이 장면을 잡은 그는 신문사에 나오자마자 짧은 기사와 함께 이 사진을 넘겼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이 독립된 사진기사는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애완견은 탈 수 있는데도 인명을 지키는 맹도견이 탈 수 없다니……」의 소리가 신문사에 빗발치고 국철에도 진정이 잇달았다. 결국 이 한 장의 사진은 「맹도견도 주인과 함께…」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8) 이러한 실례는 우리 보도사진의 역사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결국 한 장의 사진이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를 설득하는 기능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독립성을 지닌 보도사진은 취재 각부에서 의뢰받은 사건이나 상황의 현장 사진취재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령 장례식사진에서도 현수막이나 조화만 보이는 전경사진이 아니고 가장 슬퍼하는 미망인이나 애통해 하는 발의 표정을 잡은 경우를 우리는 접할 수 있었다. 그 한 장의 사진은 그 어느 잘 쓴 기사보다도, 긴 기사보다도 많은 말을 해 줄 수 있었다. 이와같이 보도사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시작한 데에는 역시 신문내부의 개안이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본다. 취재 각부에서, 어디어디 가서 이러이러한 장면 한 장 찍어오라, 아니면 전혀 예비지식도 주지 않고 「함께 나가자」 해 온 것이 지난날의 우리

사진취재의 관행이었다. 신문사에 돌아오기가 바쁘게 「이봐, 그 사진 빨리 넘겨, 아무거나 한 장 세로 가로 양쪽으로 만들어, 편집하기 편하게…」-이것이 또한 지난날 편집부에서 날아온 독촉장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달라졌다. 편집국 안에 사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사뭇 무르익고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리는 편집회의에서 사진부장의 발언기회가 주어지고, 사진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논의와 토론의 대상이 되는 대접을 받기에 이르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편집회의에서 취재 각부의 데스크가 제출하는 취재예정계획서를 사진부장은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사진부장도 독자적인 취재계획서를 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미 그날의 편집 방침의 테두리를 마련하는 회의를 사진부장이 주재하여, 각면의 사진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한다.9) 우리의 신문이 여기까지 이르자면 길은 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출발은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편집인이나 편집국장이 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일이 사진취재나 고르기 회의를 주재하고, 컬러사진의 경우 루페로 들여다 보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우리 신문계에 감돌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진을 쓰느냐를 놓고 편집국장단, 사진부장, 편집부장, 해당 취재부장 등이 열띤 의견교환을 하는 장면을 편집국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다. 보도사진의 내일을 위한 낙관적인 징후이다.

3. 사진기자의 현주소

신문에서의 사진의 위치가 낙관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음과 함께 사진기자의 주거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오늘이다. 굳이 여기서 이땅 사진기자의 역사를 되돌아 볼 여유는 없지만, 오늘의 사진기자는 적어도 초기 도제 제도 아래에서의 전근대적인 「사진사」의 대접은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까지도 남아있던 「사진반」의 대우도 면하게 되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신문사의 사진부는 사진제판의 기능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 말부터 사진제판 기능은 공무국으로 옮겨지고 이름 그대로 사진부의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사진기자공개모집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일반기자와 마찬가지로 대학 출신자들이 사진기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의 신문계의 사진부데 공채 출신들이 라는 것을 보아도 사진기자의 믿음직한 위치는 마련된 셈이다. 이렇듯 정통적인 훈련을 받은 사진기자들이 사진기자의 구실을 다하고 보도사진의 본령을 수행하자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30년 넘어 사진기자로 활약한 최경덕은 그의 회고록에서 「보도사진기자는 사사로운 개인일보다 사회, 국가와 함께 지내는 공인」이라고 말하고 사진기자의 계명을 이렇게 적고 있다. 「첫째, 보도사진은 카메라로 쓴 뉴스다. 둘째, 사진이 사진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간은 느낌의 동물이어서 독자의 마음과 눈을 잡아챌 그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다. 셋째, 사건을 그저 찍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중심적인 테마가 있어 생명력 있는 화면을 이루어야 한다... 끝으로, 보도사진기자는 인간이어야 한다 차가운 이지와 뜨거운 감성을 고루 지닌 사람... 사진기자는 증언자이며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부심과 양심을 병행하여 위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0) 일본의 사진기자 출신 약림방삼은

보도사진기자를 위한 7개조로서 「책임감과 근성」, 「모럴」, 「건강」, 「사물을 보는 눈과 판단력」, 「공정」, 「메카니즘」, 「교양」을 들었다. 11) 최경덕의 「보도사진기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라든가 약림의 「모럴」, 「공정」, 「교양」은 바로 사진기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라고 하겠다. 반드시 법이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따지기 이전에 신문의 사진기자는 프로페션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사진기자의 프로페션(profession)은 좁(job)이나 오큐페이션(occupation)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어떤 동경대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사진기자가 프로페션 윤리에 투철할 때에 시민의 권익침해 등 윤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사진 촬영기재는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사진 전송차가 한국에서도 이미 운용되고 있다. 또한 모터 드라이브 초고속 카메라, 고단위 망원렌즈, 야간촬영(레이저)카메라, 무성카메라, 비금속카메라 등의 출현은 모두가 사진보도를 주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초에 14 커트의 사진을 찍어 버리는 모터 드라이브 카메라와 같은 놀라운 기재의 발달은 자칫 보도사진기자의 자세를 흐트러뜨릴 우려마저 없지 않다. 「책임감과 근성」은 사진기자의 금과옥조이기 때문이다.

III. 한국신문 보도사진의 문제점

1. 장식용 사진의 남용

이제 오늘의 우리 보도사진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차례이다. 앞에서 우리 보도사진의 든든한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낙관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적었지만, 이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 본다. 그 첫째가 장식용 사진의 남용이다. 광고를 제외한 기사면에 실리는 모든 사진은 다 보도사진이라는 광의의 확대해석이 없지 않으나 신문에 실리는 사진이 모두 보도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른바 장식용 사진은 보도사진의 본령을 그르치는 것이다. 연재소설에는 삽화가 꼭 들어가야 할는지 모르지만 뉴스와 직접 관계없는, 다만 상징적인 사진을 살아있는 기사에 붙인다는 것은 오늘의 살아있는 신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문편집에서는 흔히 「엑세서리 사진」이란 말을 쓴다. 이 엑세서리 사진은 보도사진이 아니다. 이미 죽은 사진이다. 3월 12일자 어느 조간신문을 펼쳐 보면 엑세서리 사진이 적어도 넉장이 들어 있다. 이날의 이 신문에 한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신문을 보면 이런 장식용 사진 3~4장은 예사로 들어간다. 이러한 장식용 사진은 문자 그대로 지면장식을 위한 사진이다. 한면에 적어도 1~2장의 사진이 들어 가야만 지면이, 체재가 산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지면의 인상과 체재의 효과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진을 쓰면 될 것이다. 미국의 크레딧 카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크레딧카드를 모은 사진을 쓸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신문사진은 뉴스사진과 피쳐사진으로 대별되지만 피쳐사진은 장식용 사진과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구미의 경우 피쳐사진이 대접을 받고 있으며, 사진기자의 금과옥조처럼 되어 있는 폴리처상 수상작품을 보아도 피쳐사진이 눈을 끈다. 차범근의 골인 장면이 뉴스 사진이라면 이를 지켜보다가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그 부인의 모습은 피쳐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피쳐사진에 적극적으로 부딪힌다면 장식용 사진의 남용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장식용 사진을 우리 신문에서 없애자면 레이아웃면에서도 일대혁신을 꾀해야 함은 물론이다.

2. 초상권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장식용 사진의 남용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일쑤이다. 「이 사진은 기사 안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이라는 사진설명을 붙여 그야말로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을 쓰는 경우이다. 이 경우 거기 등장한 인물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하게 마련이다. 한국에서 초상권에 대한 판례는 아직은 적다. 그러나 장식용 사진으로 인한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신문사예의 구두 또는 서면항의는 자주 볼 수 있다. 어떤 질병을 다루는 건강관계기사에 곁들인 사진 속의, 손을 머리에 얹고 앉아있는 어느 직장의 모습에 자기 얼굴이 들어 있다고 항의해 온 일이 있었다. 그 사진은 그 직장의 일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항의해 온 그 「건강한 사람」이 다만 손을 머리에 얹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가 돼 버린 것이다. 신문에 어느 기원의 풍경을 찍은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 중에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사진의 주인공이 항의를 해왔다. 직장인인 그는 점심시간에 잠시 기원에 들렀던 것이 그 사진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바둑이나 두러 다니는 사람이 돼 버린 것이다. 형법(제 307 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하자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죄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람의 사생활에서의 사실을 공연히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남이 공개했을 때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공개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 침해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신문에서보다는 대중잡지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겠다. 초상권의 침해에 대한 일본 대법원의 판례(1969년)가 있다. 데모의 위법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이 데모대원으로부터 전치 1 주간을 요하는 상처를 입은 공무집행방해상해사건에 관한 것이다. 피고측의 초상권 주장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의 하나로서 아무도 그 승낙 없이 함부로 그 용모 및 자태를 촬영 당하지 않는 자유를 지녀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이에 덧붙여 촬영 당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 판사의 영장 없이도 경찰관에 의한 촬영이 허가되는 경우로서 3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곧 ① 범죄현행이거나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② 더욱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③ 또한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¹²⁾ 일본의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에 의한 촬영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지 않아 오랫동안 궁극한 문제였다. 1977년에 이르러 삿포로고재에서 일반 사인이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 용모·자태를 촬영해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는 자유」의 침해가 되지 않는 요건을 제시했다. 그 요건은 정당한 보도목적에 대한 사진취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곧 ① 사진촬영의 목적이 정당한 보도를 위한 취재, 정당한 노무대책을 위한 증거보전, 소송 등에 의해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증거보전 등 사회 통념상 시인되는 정당한 것으로, ② 사진촬영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③ 또한 그 촬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13) 한국의 경우 초상권에 대한 판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사진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된 사례는 1986년의 경우 한건도 없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86년에 236건에 이르러 사진계제상의 윤리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14) 그러나 우리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례로서 간첩오보사건, 정신질환자인 사진작가의 극약 먹은 여인 촬영사진 보도사건, 집들이사진 무단 도용사건 등 10건(1981년~1986년)이 기록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보도사진에 있어서도 시민의 권익 침해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명예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가치이다. 명예가 근대적인 권리로서 이미 법적 보호를 누려온 것과는 달리 프라이버시는 근래에 와서 비로소 그 법적보장이 문제가 된 것으로, 말하자면 현대적 권리이다. 오늘날 높아 가고 있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스스로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바로 언론에의 호소와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도사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3. 범죄수사와 보도사진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의 사진 보도이다. 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 소년법에서 미성년의 이름과 사진의 게재를 막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타인의 명예와 자유」 장 제 4항은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봉욕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 제 61 조는 「이 법에 의하여 조사심리 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소년범죄의 경우 이름이나 사진을 보도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않다. 미성년자의 범죄라 할지라도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도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법 (제 61 조)은 미성년자의범죄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이름과 사진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소년법과 다른 점은 벌칙이 없는 것으로 일종의 윤리규정의 성격을 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신문계는 소년법에 따른 보도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협의한 끝에 하나의 지침을 마련했다. 여고생 살해사건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진 것을 계기로 1958년 「신문협회의 소년법 제 61 조에 따른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 제 61 조는 미성숙한 소년을 보호하고 그 장래의 갱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문은 소년들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법의정신을 살려야 한다. 벌칙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신문의 자주규제를 바라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신문은 한층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20세 미만의 비행소년의 이름, 사진 등은 지면에 게재해서는 안된다. 다만 ① 도주 중으로 방화 살인 등 흉악한 누범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명수배 중의 범인수사에 협력하는 경우 등 소년보호보다도 사회적 이익의 옹호가 강하게 우선하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름, 사진 게재를 인정하는 제외 예로 해 줄 것을 당국에 요망하며 또한 이를 신문계의 관행으로 확립하고자 한다」 15) 미성년자의 범죄보도와 함께

보도사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수사상의 용의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얼굴사진이 찍히고 이것이 신문에 난다면 시민의 권익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신문의 「보도기준」은 「용의자에 관한 보도」(1967. 9. 6 마련)에서 「현행범 또는 현저한 증빙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용의자의 주소, 성명, 사진, 직업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의 보도기사에서 용의가 짙거나 없거나 간에 이름에 경칭을 붙이고 있으나 사진의 경우 이 취급이 정반대로 되고 있는 사례를 적잖게 본다. 「현저한 증빙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 사진을 쓸 수 있다는 「보도기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초상권의 문제가 제기된다. 용의자의 사진보도가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는 신문으로서는 지명수배중의 용의자에 대한 사진보도는 수사협조라는 사회적 이익면에서 면책사유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가령 경찰에서 지명수배중의 용의자 사진을 이미 공공연한 장소에 공개한 마당에 신문이 굳이 게재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건보도와 관련해서 사건이나 사고의 목격자 사진을 신문에 공개하는 경우 사람의 권익침해가 되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학생이나 직원이 범죄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학교 또는 회사나 기관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도 신문의 윤리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4. 법정 안 촬영문제

미결수에 대한 권익보호는 앞서서도 지적한 범죄수사상의 용의자에 대한 촬영, 사진 취급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 우리의 경우를 보면 미결수에 대한 촬영 및 사진 게재는 예사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신문계의 관행이다. 여기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의 권익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법정에서 나올 때 미결수 또는 기결수를 사진 취재할 수 있으나, 법정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1970년대 초까지는 법정 안에서의 사진취재가 거의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문계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사진기자의 취재 행동이 법정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73년 법원조직법은 「제 54 조의 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먼저 1949년부터 법정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신문계는 신문협회의 편집위원회와 사진기자협회가 협의하여 대법원에 요망서를 보내는 등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 왔다. 40년 가까이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나 일본신문계도 이 문제만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일본 신문협회 편집위원회는 1983년 「법정 내 카메라 취재에 관한 자주기준」을 대법원에 낸 요망서 속에서 표명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① 촬영은 신문, 통신, 방송 각사가 협의하여 대표취재를 한다. ② 촬영은 원칙적으로 스틸 카메라맨 1명, 비디오 카메라맨 1명으로 한다. ③ 촬영은 개정 전 3분간으로 한다. ④ 촬영기재는 스틸, 비디오 다같이 취재기자가 혼자 조작할 수 있는 휴대용 소형카메라를 사용한다. ⑤ 취재기자는 입장, 퇴장 뿐만 아니라 정내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지시에 따르며 정해진 위치에서 촬영한다. ⑥ 촬영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소리에 그치도록 한다. ⑦ 촬영에 있어서는 조명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16)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법정촬영을 한 경우는 1974년의 문세광 재판, 1979~80년의 김재규 재판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법정촬영은 조건부로 허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판공개와 정신이나 보도자유의 면에서 마땅히 법정만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피고인의 인권, 법관, 증인, 방청인 등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남는다. 우리 신문계도 법정 내 사진취재를 위한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법원 당국과 협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V. 맺음말-몇 가지 제언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신문의 보도사진은 미제 문패를 달 수 있을 만큼 제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사진기자 역시 현주소를 제대로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전환기,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II, III 장에서 언급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신문 보도사진의 개선 또는 확대 방향을 찾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사진은 더욱 커져야 한다 「우표딱지사진」에서 장족의 발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 지면의 사진의 크기는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는 보도사진의 독자적 지위와 영역의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2) 사진의 크기와 관련된 과제이지만, 편집(레이아웃)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감한 편집이 곧 신문 보도사진을 살릴 수 있으며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과감한 편집이란 크기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편집 방법상의 혁신을 뜻한다. 같은 내용의 사진이라도 A 신문과 B 신문이 현격하게 다른 효과를 거두는 것은 바로 과감한 편집 때문이다.

(3) 장식용 사진을 줄이고 피쳐 사진을 확충해야 한다. 역시 과감한 편집은 장식용 사진을 남용하는 구곡에서 탈피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장식용 사진을 남용하다 보면 윤리면에서도 시민의 권익침해를 낳을 위험률이 높게 마련이다. 이러한 죽은 장식용 사진을 죽이고 살아있는 피쳐 사진을 많이 실어야 한다. 피쳐 사진에는 인간의 정감이 담겨있고 강력한 호소력이 들어 있다.

(4) 신문의 보도사진은 윤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과다한 경쟁 속에서 신문의 양식과 모럴을 팽개쳐버린 채 반사회적 반윤리적 사진을 취재하거나 게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공공장소에서 당사자의 허가없이 함부로 사진을 찍는 구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높아가고 있는 시민의식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더욱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이다.

(5) 사진기자는 스스로 캡션을 써야 한다. 사진기자의 지위와 신뢰도를 더욱 튼튼히 하는 요건 중의 하나는 바로 이 과제이다. 캡션은 보도사진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남의 손에 맡긴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취재한 사진에는 스스로의 입김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근래에 이르러 신문계에서는 사진기자 자신이 캡션을 쓰게 하는 반가운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 훈련은 꾸준히 지속되고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6) 보도사진에는 반드시 크레디트를 넣어야 한다. 1985년에 창간된 한 스포츠신문은 모든 사진에 사진취재 기자의 이름을 밝히고 각면의 편집기자 이름까지 넣고 있다. 신문사진에 크레디트를 넣는 것은 보도사진의 책임과 독자의 신뢰감 그리고 사진기자의 긍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최근 크레디트를 넣은 신문사진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뉴스사진, 피쳐사진에는 크레디트를 밝히는 데까지 가야 할 것이다.

(7) 독자제공 사진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동물원의 호랑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고교생의 무서운 장면이 독자제공사진으로 몇 신문에 게재되었다. 한 사람만이 찍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명이 찍었다. 사진기자가 없는 현장에서 독자가 촬영한 사진은 살아있는 신문사진 구실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신문처럼 사진을 통해서 신문과 독자를 연결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자제공 사진의 경우 시민의 윤리의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이전에 사진부터 찍는 문제, 그리고 매명을 위한 의도적인 사진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는 것이다.

(8) 역사의 기록은 잘 정리 보존되어야 한다. 역사의 목격자로서의 보도사진을 영구히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어느 신문사이든 하루 수백장의 사진이나 네가필름이 쌓인다. 이 많은 분량의 사진자료를 그날그날 정리하여 보관하지 않으면 사장되게 마련이다. MBC-TV가 1986년부터 매주 수·목요일 연속문화기획으로 방영하고 있는 「그때를 아십니까」는 지난날의 귀중한 기록필름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의 사진은 역사의 기록으로서 소중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 자료의 정리는 시민의 권익옹호 면에서도 중요하다. 아무 사진이나 비슷한 것을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시민의 초상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침해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주>

- 1) 최인진, 한국신문사진발달약사, 신문연구(관훈클럽), (1979년 겨울호), p.275 이하.
- 2) 한국사진기자회, 사진기자<수첩>, (한국사진기자회, 1987) 참조.
- 3) 한국방송공사, 1985년도 국민생활조사, (한국방송사업단, 1986), p.51.
- 4) 위와 같은 책, p.35
- 5) 스포츠 서울, (1987년 3월 14일자), p.12.
- 6) 이규현, 사진과 기사의 비중, 한국신문협회, 제 4회 전국편집국장 세미나 주제논문집, (한국신문협회, 1968), pp.49-50. 당시 한국의 중앙 종합일간지는 하루 4페이지 발행이었음.
- 7) 유재천, 보도사진과 사진기자의 기능, 「사진기자」, (1986년 봄호), p.32,
- 8) 일본신문협회, 신문기자, (동경. 일본신문협회, 1970) pp.34-35.
- 9) 위와 같은 책, p.18.
- 10) 최경덕, 역사의 목격자, (을지사, 1983), p.225.
- 11) 若林邦三, 보도카메라맨, (동경 : 도서출판사, 1977) , pp.282-300.
- 12) 일본신문협회, 취재와 보도, (동경 : 일본신문협회, 1984) p.177
- 13) 위와 같은 책, pp.178-179.
- 14) 윤리면에서 본 일본신문, 편집인협회보, (1987년 2월 28일자), p.5.

15) 일본신문협회, 취재와 보도, (동경 : 일본신문협회, 1984), pp.29-30.

16) 일본신문협회, 신문연구, (1983년 4월호), p.85.

- 서울대 문리대 영문학과, 미 코럼비아대 신문대학원
- 서울신문 문화부장, 편집 부국장, 주일특파원, 주간국장 역임
- 현재 서울신문 편집제작 담당이사